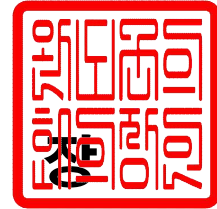


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6년 4월 1일

완 도 군 의 회 의 장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발 의 자 : 지 민 의 원
3. 제 정 이 유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를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장례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부 개정함.
4. 주 요 내 용
 - 사용료 면제 및 감면(안 제11조제2항제1호)
 - 별표4 수정

5. 관련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
6. 조례안예고기간 : 2026. 4. 1. ~ 2026. 4. 6.

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1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(전화: 061-550-5933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8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1팀(전화: 061-550-593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
2.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안 예고명	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
	주 소			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				
<p>「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</p>				
년 월 일				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				
완도군의회의회장 귀하				

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2항제1호 중 “따른”을 “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사용료 면제 및 감면) ① (생 략)</p> <p>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봉안담 사용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사용기간 연장시 사용료등은 감면하지 않는다.</p> <p>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</p> <p>2.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11조(사용료 면제 및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 - - - - .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</u>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붙임1

현행안

[별지 제4호서식]
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input type="checkbox"/> 면제 장사시설 사용료, 관리비 </div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"> 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 신청서 </div>				처리기간
				즉시
사 망 자	성명	(한자)	생년월일	성별
	주소			
	사망자	사망장소 사망원인		
신 청 자	성명			성별
	주소			
	전화번호	사망자와 관계		
사 용 시 설 명		봉안담()		
감 면 사 유 (해당번호 ○표)		「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11조 1. 무연고 행려 사망자() 2. 국민기초의료급여수급자() 3. 장기기증자() 4. 군수가시행하는각종개발사업에서발생한무연분묘() 5.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()		
감면받고자 하는 요금		계	사용료	관리비
		원		
「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, 관리비를 면제(감면) 받고자 신청합니다.				
년 월 일 신청자 주소 : 성명 : (인)				
완 도 군 수 귀하				
※ 구비서류 : 감면 입증서류				

붙임2

개정안

[별지 제4호서식]

장사시설 사용료, 관리비					<input type="checkbox"/> 면제 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		신청서		처리기간
									즉시
사망자	성명	(한자)			생년월일			성별	
	주소				사망장소				
	사망자				사망원인				
신청자	성명				생년월일			성별	
	주소								
	전화번호				사망자와 관계				
사용시설명	봉안담()								
감면사유 (해당번호 ○표)	「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11조								
	1. 무연고 행려 사망자() 2. 국민기초생계급여수급자() 3. 국민기초의료급여수급자() 4. 장기기증자() 5.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무연분묘() 6.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()								
감면받고자 하는 요금	계				사용료			관리비	
	원								
「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, 관리비를 면제(감면) 받고자 신청합니다.									
년 월 일 신청자 주소 : 성명 : (인)									
완도군수 귀하									
※ 구비서류 : 감면 입증서류									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수급권자”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.
2. “수급자”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.

제7조(급여의 종류)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생계급여
2. 주거급여
3. 의료급여